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일본 도쿄지사)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0.4월)

1.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관련

○ 유제품 수출시 위생검역증 제출 필요

- 일본 동물검역소에서는 2017년 11월 1일자로 생유를 포함한 모든 유제품에 대해서 동물검역을 확대 실시하여 온 바 있으며,
- 금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6월 1일자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도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하게 됨으로 인해 수출시 주의가 필요시 됨

○ 주요 시행내용

- 일본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유(乳)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하게 됨
- 일본 수출시에는 사전에 한일간에 정해진 양식에 의해 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일본 검역소에 제출 필요

○ 검역 대상 품목

유(乳)	생유, 우유, 특별우유, 생산양유, 살균산양유, 면양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유
유제품	크림, 버터, 치즈(프로세스 치즈는 제외), 농축유청, 농축유, 탈지농축유, 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분유, 탈지분유, 크림파우더, 유청파우더, 단백질농축유청파우더, 버터밀크파우더, 가당분유, 발효유

□ 시사점

- 일본으로 유제품 및 관련제품을 수출시에는 해당 상품이 식품 위생검역 및 동물검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일본 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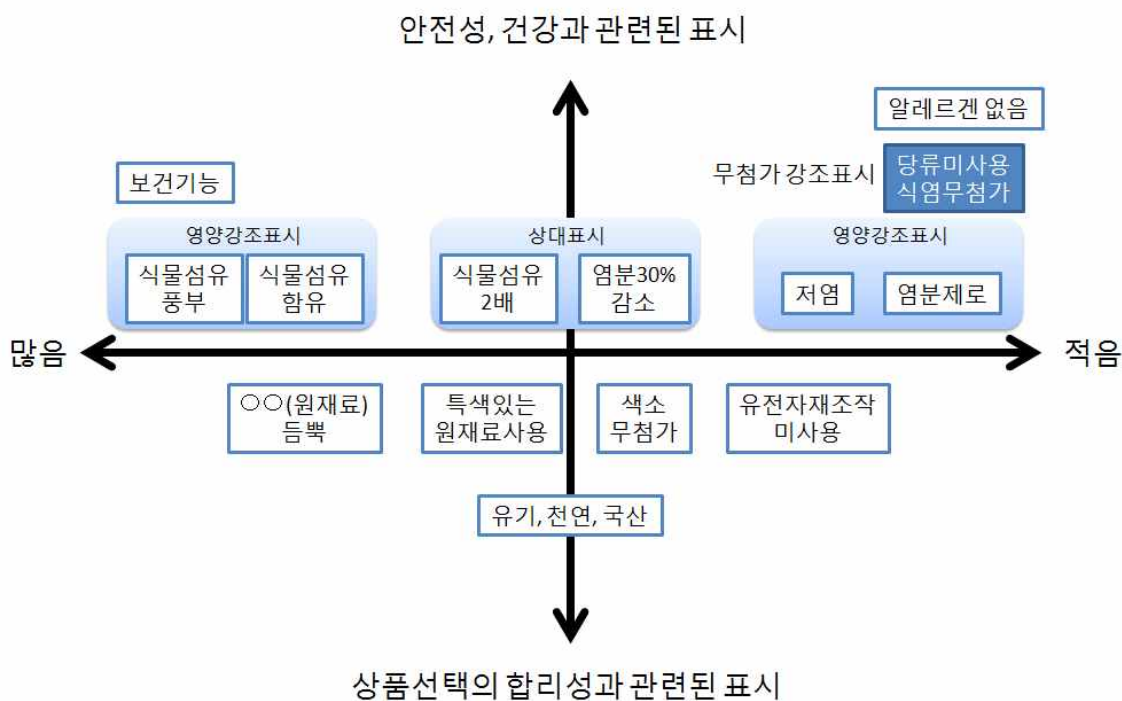
도착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주의가 요망됨

- 일본 동물검역소에 제출하는 동물검역증 및 식품검역소에 제출하는 위생증명서 양식이 서로 상이하여 각각의 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관련제품 수출업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됨

2.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주의

- 일본 소비자청 표시제도 변경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주의가 필요시 됨
- 소비자청에 의하면 식품표시시 식물섬유가 풍부하다거나 염분제로 등의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기재시에는 관련 근거를 보관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규제가 있다. 상세 내용을 이해함으로서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방법으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아래 그림은 각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표시를 유형별로 정리한 표임



- 도표상 위부분과 아래부분의 차이점은 강조목적의 차이이며, 안전이나 건

강과 관련하여 강조하려는 경우와 식품의 품질에 관해 강조하려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도표상 좌우의 차이점은 강조내용의 차이로 어떤 특정성분을 사용함으로써의 강화된 경우와 또한, 어떠한 특정성분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영양성분이 경감된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 이렇게 내용을 강조 할 때에는 근거에 따른 자료가 필요한데 원재료의 종류와 관련하여 강조할 경우, 원재료 규격서나 제조기록 등이 필요하다. 영양성분의 양과 관해 강조하려는 경우, 영양성분에 대한 분석성적서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 식품의 경우, 모든 원재료에 대해 항상 같은 규격의 재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원재료 규격서나 분석 성적서를 확인하는 품질보증(표시한 것과 실제 성분이 맞는지 확인)작업이 중요하다.
- 따라서, 강조하는 표시에 대해,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근거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표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부분을 강조할 때는, 그에 맞는 근거를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 자료원 : 소비자청 식품표시기획과

https://www.maff.go.jp/tohoku/6zi_koudou/attach/pdf/190718gaiyou-2.pdf

□ 시사점

- 특히, 소금함량의 경우 식염상당량으로 표기해야 하는 등 한국과는 표기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시 됨
- 업체의 수출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는 현지화 사업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이 확실함으로 동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이 바람직함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 4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34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한국산 식품의 위반사례는 특별히 없어 검역상 위생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대장균 검출 등 위생위반이 3건(8.8%), 곡물류의 아플라톡신 검출 14건(41.2),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 위반 8건(23.5)으로 나타났으며, 첨가물 위반이 9건(26.5)으로 나타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매월 중국 및 미국산 수입식품이 위반율이 제일 많았으나, 4월의 경우 중국은 3건으로 다른 월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의 위반사례가 발생한 반면, 미국의 경우 위반건수 12건으로 전체 위반율의 3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12건의 위반건수 중 옥수수, 아몬드, 땅콩류 등에서 곰팡이균 아플라톡신 위반이 11건, 보리에서 변색등의 위생 위반이 1건 발생함
- 중국의 경우 3건의 위반사례중 신선자소잎에서 농약 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 : MIPC)가 0.60ppm 검출되어 위반이 됨. 붉은 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으며, 레토르트 버섯가공식품에서 미생물 양성의 위반사례가 각1건씩 발생함
- 태국의 경우 컵용기 파스타에 부착된 조미료 스프에서 지정외 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위반이 3건 발생하였으며, 아이스크림에서 대장균군 양성 위반이 1건 발생함
- 기타국가의 위반사례를 보면 가나의 카카오콩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2

건 발생하였으며, 베트남의 경우 냉동 슬라이스 파프리카, 고추, 아보가드에서 잔류농약이 각1건씩 계3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